

	학생상담센터운영규정	규정번호	3-7-17
		제정일자	2016.03.01.
		개정일자	2018.03.01.
		개정차수	1차
		소관부서	학생성공처 (학생상담센터)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안산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 학생상담센터(이하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역할) 센터는 상담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자기계발과 전인적인 성장발달을 돕기 위한 지원 활동을 담당한다.

제3조(업무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

1.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
2. 각종 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 상담
3. 기타 상담에 관련된 사항

제2장 조 직

제4조(센터장)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,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, 센터의 소속 교직원을 지휘, 감독한다.

제5조(상담연구원 및 상담사) ① 센터에는 상담업무 수행을 위해 상담연구원 및 상담사를 둘 수 있다.

② 상담사는 해당분야 석사이상의 학위 또는 상담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1년 이상의 상담 경험을 가진 자여야 한다.

③ 필요한 경우 위의 자격을 갖춘 전임교원 중에서 상담사를 위촉할 수 있다.

④ 상담연구원 및 상담사 임용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관계규정에 따른다.

제3장 운영위원회

제6조(구성)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상담운영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의 구성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.

제7조(위원장 및 직무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.

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8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9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

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10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센터 운영·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2. 센터 규정의 개·폐에 관한 사항
3. 센터의 사업계획 및 예산·결산에 관한 사항
4. 연구 및 개발관련 과제 선정 및 필요한 경우 평가에 관한 사항
5. 기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

제5장 보 칙

제11조(세부사항)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기존의 학생상당실운영규정은 폐지하고 이 규정으로 대체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